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90호
2024. 7. 8. (월)



목 차

◆ **자치법규 등**

[조 례]

제92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자치법규 등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9292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2024년 7월 8일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“여성가족정책실”을 “여성가족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마목 중 “기술심사담당관”을 “건설기술정책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라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미래청년기획단”을 “미래청년기획관”으로 한다.

차. 글로벌도시정책관에 관한 사항

제48조의2제1항 중 “두며”를 “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구성된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조직 개편('24.7.1.)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, 정책지원관의 소관부서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함
- 나.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의 명칭을 여성가족실로 조정함
- 다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조정함
- 라.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중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삭제하고, 미래청년기획단의 명칭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조정함
- 마. 정책지원관의 소관부서를 사무처 또는 위원회로 정함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